



# 크라우드펀딩 관련 보험상품 출시

이선주 연구원

## 요약

■ 미국의 JOBS법 제3장(크라우드펀딩)의 시행을 계기로 최근 보험회사 AIG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보험상품인 “Crowdfunding Fidelity”를 출시함. 동 상품의 특징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자의 사기에 대한 리스크를 보장해주며, 증권발행 이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기에 대해서만 2백만 달러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것임. 우리나라 보험회사들도 신상품의 일환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자의 사기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를 개정한 JOBS법<sup>1)</sup> 제3장의 시행<sup>2)</sup>과 더불어, AIG보험회사는 증권형(equity)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상품인 “Crowdfunding Fidelity”를 출시함.<sup>3)</sup>

- 크라우드펀딩은 대중(crowd)과 자금조달(Funding)의 합성어로 후원<sup>4)</sup>이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소셜네트워크나 인터넷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함.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지분증서뿐만 아니라 채무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까지도 발행이 가능함.
- JOBS법 제3장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창업기업 등이 증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법체계로서, 2016년 5월 16일부터 시행됨.
  - 동 규정은 등록된 펀딩포털(funding portal)을 통한 일반투자자들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합법화하고 있음.<sup>5)</sup>
  - 펀딩포털(funding portal)의 경우 별도의 자본금 없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자율규제기관에

1) Jump 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2) JOBS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각 장(title)의 시행기한별로 증권법, 증권거래법, 사베인스-옥슬리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수정·보완하도록 위임함; 금융투자협회(2014. 1. 28), “미 JOBS법 시행 경과 및 영향 점검”.  
 3) 2016년 5월 24일 출시함(<http://www.aig.com/about-us/news-and-media/featured-news/aig-launches-crowdfunding-fidelity-a-new-solution-for-the-crowdfunding-economy>).  
 4) 크라우드펀딩 유형 중에는 창조적 프로젝트를 후원하여 금전적 이외의 보상을 받는 후원형이 있음.  
 5) 기존 증권거래법 등에 따르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사모 관련 제한규정들로 인해 적격투자자(credited investors)에게만 허용되거나 참여가 허가된 한정된 숫자의 불특정 투자자(non-credited investors)에게만 가능하였음.

등록하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음.

■ ■ AIG에서 판매를 시작한 “Crowdfunding Fidelity” 보험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발행자 사기에 대한 리스크를 보장해주며, 최초의 가입자는 영국에 등록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Eureeca임.

- 발행자가 증권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을 횡령하여 회사가 파산하거나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발행자의 부주의 또는 그릇된 의사결정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증권발행 이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기에 대해서만 보장가능하고 사기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발견은 차년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보상한도는 2백만 달러임.
- 영국에 등록되어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Eureeca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Eureeca에 지급하는 수수료(fee)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

■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관련된 리스크로는 발행자의 사기(Fraud), 프로젝트 운영자의 경험부족(Inexperience), 지식재산권 침해(Theft), 투자의 비유동성(Illiquid) 등이 있음.<sup>6)</sup>

- 크라우드펀딩의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불법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기 리스크가 발생하고, 프로젝트 운영자의 경험부족으로 투자금을 관리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음.
- 대부분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아 아이디어 침해로 인한 프로젝트 실패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음.
- 투자금을 최소 12개월 동안 보유해야 하는 비유동성 리스크가 존재함.
  - JOBS법 제3장 302조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매입한 유가증권은 발행회사, 적격투자자, 매입자의 가족 등을 제외하고는 1년 내 매도가 금지됨.

■ ■ 우리나라 보험회사도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의 일환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자의 사기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7월 기준 발행금액 69억 9,092만 원을 기록하여 활성화되고 있음.<sup>7)</sup>
- 국내 보험회사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를 위해 발행자 사기 위험을 경감시키는 보험상품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kiri](#)

6) Assurex Global(2015), “Crowdfunding: The future of equity investing”.

7) 금융위원회(2016. 1. 10),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파이낸셜뉴스(2016. 7. 5), “크라우드펀딩, 1,724명 개미들 70억 모았다”.